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6241 |
|----------|-------|

발의연월일 : 2018. 10. 31.

발의자 : 박광온 · 송갑석 · 김영주
권칠승 · 전현희 · 윤준호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대주’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3항).

법률 제 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주(貸主)에”를 “대여자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